

11. 주택감리제도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요령

1999. 10. 27. 건설교통부 주관 58070-5082호

가. 감리원의 배치 및 업무범위

주택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는 책임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동안, 보조감리원은 공사분야별로 해당공사기간동안 각각 배치하여야 하나, 감리가 제외된 공사는 감리원의 배치 및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.

나. 감리제외 대상공사의 사용검사 처리

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에서 제외되는 공사는 사용검사시 동 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 감리의견서를 사용검사 신청서 서류에 첨부하지 않은 것임. 따라서 동 규칙 시행일 이후(10. 20)에 사업승인된 공사부터는 사용검사권자가 감리제외 대상공사에 대한 시공의 적법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.

다. 감리제외 대상공사의 적용시점

감리원의 배치에서 제외되는 공사가 동 규칙 부칙에서 시행일 이후(10. 20)의 사업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 사업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고, 같은날 개정·고시된 “주택건

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” 부칙에서 감리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, 이 경우 감리제외 공사의 적용시점은 동 규칙 시행일 이후 사업승인된 사업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고 감리자 지정시 운영에 착오없도록 할 것

라. 분양가격 결정

감리비 예정가격에 감리제외 대상공사비는 포함되지 않으며, 감리자 지정시 낙찰된 금액을 감안하여 분양가격을 결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고하도록 하여야 함

마. 감리자(감리원)의 감리업무수행실적 적용시점

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부표에 의한 감리자(감리원)의 감리업무수행실적 적용시점은 '94년 8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 또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산정하여야 함.

주택회보